

大田直轄市都市計劃事業收益者負擔金徵收條例廢止條例案

議案番號 492

提案年月日 : 1994年 11月 日
提案者 : 地方自治發展特委委員長

1. 提案理由

- 이條例는 都市計劃法 第65條의 規定에 의하여 都市計劃事業收益者負擔金의 賦課徵收에 의하여 必要한 事項을 規定하기 위하여 1977. 2. 14 制定되었으나
- 開發利益 還收에 관한 法律制定(1989. 12. 30)과 동시 이 法 附則 第3項에 依據 都市計劃法 第65條가 削除되어 이 條例를 廢止하고자 함.

2. 主要骨子

- 大田直轄市 都市計劃事業 收益者負擔金 徵收條例의 廢止(施行日 : 公布한 날부터 施行)

조례 제 호

대전직 할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

대전직 할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